



# PHT, Incorporated

tel: 82-2-779-2030

email: <100@pht.kr>

www.pht.kr

5F, 15 Namdaemunro-1gil, Jung-gu, Seoul 04526 KOREA-South

## 무역과 자금 공조계약서 trade and currency swap contract

계약연번: PH21-020

하기 서명란에 명시한 **평천무역(이하 갑)**과 **평해상사(이하 을)** 간의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에 관한 계약서를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. 단, 배타적 독점계약이 아님을 명시한다.

### 제 1 조. 무역공조와 자금유용 협조요청

1. 갑과 을(이하 양자)은 각각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조한다.
2.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은 요청업체가 서면으로 요청하며, 제공자는 이를 검토하여 자유롭게 판단한다.

### 제 2 조. 공조와 유용의 범위, 한도

1. 범위: 양자 사업자등록증의 업태/종목과 그와 관련한 일에 관하여 공조한다.
  - ① 무역- 국제무역과 국내유통을 포괄하는 구매, 유통, 보관, 판매, 기타에 공조한다.
  - ② 자금- 원화(KRW), 미화(USD), 기타 화폐 등 양자 유용할 수 있는 통화.
2. 한도: 양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과 금액

### 제 3 조. 공조와 결재의 기간, 청구, 상환, 회수, 재유용

1. 기간: ① 무역- 최초 의뢰/협약한 날이 시작이고, 완판 이나 대금결재로 끝난다.
  - ② 결재- 결재 일은 거래일 혹은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기본 07 일 이내이다.
  - ③ 유용- 양자 협의하여 자금유용기간을 정하되 채권자가 최종 결정하며 이 때는 이자를 낸다.
2. 청구: ① 무역- 무역공조와 자금유용에 대한 비용은 물건값에 포함 청구하거나, 별도 청구할 수 있다.  
또한, 무역의 경우 물품대금을 선지급 청구 할 수 있다.
  - ② 금리- 결재 07 일 이후의 자금유용에 대한 청구는 협정유용금리에 따른다.
3. 상환: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당 거래는 종료된다.
4. 회수: 채무자는 유용기간을 준수하여 채권자에게 유용금액 혹은 결재금액을 등록된 계좌로 송금한다.  
이를 어기면 채권자는 제공된 담보물권을 강제처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.
5. 재유용: 유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 종료된 이후 새롭게 자금유용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계속적 효력을 가진다.

### 제 4 조. 유용금리, 종료, 연체

1. 유용금리: 연리 8.0% 혹은 한국은행 기준금리(bok.or.kr)에 6% 더한 금리 중 채권자가 선택한다.
2. 기간종료: 3-1 항과 3-3 항에 준한다. 혹은 채권자가 30 일 이전 서면/email/문자로 종료를 통지한다.
3. 연체금리: 채무상환이 연체될 경우, 혹은 종료통지일 이후의 연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12% 더한 금리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과한다. 또한 연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한다.
4. 금리조정: 4-3 항 연체금리 이내에서 채권자의 편리에 따라 금리조정 혹은 면제할 수 있고,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### 제 5 조. 담보제공

1.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제공하고, 약속된 유용기간을 초과하여 상환하지 않을 경우, 채권자는 담보물권을 강제집행하여 유용된 원금, 이자 및 연체로 인한 손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.
2. 이면계약서로 담보물권의 자세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.
3. 담보물권 => 명시

### 제 6 조.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

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### 제 7 조. 계약기간

1. 발효: 본 계약의 발효시점은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발효유지 된다.
2. 해지: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해지를 원할 경우, 미수미지급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서면/email/문자



# PHT, Incorporated

tel: 82-2-779-2030 email: <100@pht.kr> www.pht.kr  
5F, 15 Namdaemunro-1gil, Jung-gu, Seoul 04526 KOREA-South

통지하며,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후에 계약해지 된다.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.

3. 소멸: 마지막 거래 이후 2년간 공조가 없을 경우, 본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.

## 제 8 조. 분쟁해결

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양자간의 분쟁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른다.

본 계약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 후 양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## 제 9 조. 은행계좌

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통화	기타
평해상사(주)	KEB 하나은행	029-2201-7142	원화 KRW	1518-9002-0881-04
평해상사(주)	KEB 하나은행	029-JSD-1005-557	미화 USD	1518-9001-8255-38
평천무역	KEB 하나은행	0129-1000-6871-00	미화 USD	평천무역
평천무역	KEB 하나은행	0129-1054-9408-00	원화 KRW	평천무역

## 제 10 조. 서명

갑	평천무역	을	평해상사(주)
주소	서울시 중구 40-2, 1층 전화: 02~644-8800 핸편: 010~2578-8088 이메일: <8888@naver.com>	주소	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길 15, 수상빌딩 5층 전화: 02~779-2030 이메일: <200@pht.kr>
사업자	000-30-88723	사업자	104-81-63738 <a href="http://www.pht.kr">www.pht.kr</a>
서명		서명	
대표		대표	안지현
날짜	2021.01.01.	날짜	2021.01.01.

